

국제거래법

문 1.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상 매수인이 인도 받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경우, 매수인은 물품이 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하여야 그 부적합을 주장할 수 있는가? (단, 매도인은 선의이고, 계약상의 보증기간은 없다.)

- ① 6월 내 ② 1년 내
③ 1년 6월 내 ④ 2년 내
⑤ 3년 내

문 2.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의 총칙 규정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 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의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관행과 그들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.
- ③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.
- ④ 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는 없다.
- ⑤ 이 협약의 적용상 '서면'에는 전보와 텔레크스가 포함된다.

문 3.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상 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게 한다.
- ②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③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,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④ 계약의 해제로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, 그에 대한 이자는 해제일로부터 지급하면 된다.
- ⑤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, 매수인은 그 물품으로부터 생긴 모든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문 4.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상 매수인의 물품
검사·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매수인은 당해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의 물질적 부적합과 권리상의 부적합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매수인이 합리적인 검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,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.
- ③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,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.

- ④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매수인이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, 그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.

문 5.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이 규정하고 있는 것(○)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(×)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?

- ㄱ. 협약의 적용 범위
- ㄴ. 소유권의 이전방식
- ㄷ. 채권의 시효
- ㄹ. 당사자의 행위능력
- ㅁ. 계약의 성립

- ① $\neg(\bigcirc), \sqcup(\times), \sqsubset(\times), \sqsupset(\times), \sqcap(\bigcirc)$
- ② $\neg(\times), \sqcup(\times), \sqsubset(\bigcirc), \sqsupset(\times), \sqcap(\bigcirc)$
- ③ $\neg(\bigcirc), \sqcup(\times), \sqsubset(\bigcirc), \sqsupset(\times), \sqcap(\bigcirc)$
- ④ $\neg(\times), \sqcup(\bigcirc), \sqsubset(\times), \sqsupset(\bigcirc), \sqcap(\times)$
- ⑤ $\neg(\bigcirc), \sqcup(\bigcirc), \sqsubset(\times), \sqsupset(\bigcirc), \sqcap(\times)$

문 6.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 협약은 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
- ② 이 협약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고 있다.
- ③ 이 협약은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계약유지의 원칙상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④ 이 협약은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.
- ⑤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문 7.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상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당사자는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,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.
- ②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, 제3자에 대하여만 면책요건이 충족되면 그 당사자는 면책된다.
- ③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.
- ④ 면책요건을 충족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.
- ⑤ 장애발생통지는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.

문 16. 「국제사법」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‘실질적 관련’을 가지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.
- ②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한정재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.
- ③ 「국제사법」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.
- ④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.
- 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「국제사법」 제28조에 의한 관할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있다.

문 17. 「국제사법」상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원은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는 있다.
- ②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규정에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.
- ④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외국법은 외국법으로서 적용되어야 하며, 따라서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.
- ⑤ 준거법인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.

문 18. 독일인 甲男과 독일인 乙女가 혼인한 후 甲男이 대한민국에서 취직하여 甲男과 乙女는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. 남편 甲男이 일본 출장 중 일본인 丙女와 부정(不貞)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乙女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. 甲男과 乙女の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은?

- ① 甲男과 乙女の 동일한 본국법인 독일법
- ②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
- ③ 甲男과 乙女の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
- ④ 부정행위가 행해진 장소의 법인 일본법
- ⑤ 이혼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법인 대한민국법

문 19. 「국제사법」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없는 것은?

- ① 유언자의 유언 당시 본국법 또는 상거소지법
- ② 유언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 또는 상거소지법
- ③ 상속인의 본국법
- ④ 유언 당시 행복지법
- ⑤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

문 20. 프랑스인 甲이 영국에 등록한 특허권을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인 乙이 독일에서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적용되는 준거법은?

- ① 프랑스법
- ② 영국법
- ③ 독일법
- ④ 피고 상거소지법으로서의 대한민국법
- ⑤ 법정지법으로서의 대한민국법

문 21. 영국 선적의 A선박과 일본 선적의 B선박이 충돌하였는데 A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되었다. 「국제사법」상 아래 각 사항에 대한 준거법으로 옳게 묵인 것은?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ㄱ. A선박과 B선박이 대한민국의 하천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|
| ㄴ. A선박과 B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|
| ㄷ. A선박과 B선박이 공해에서 충돌한 경우에 그 책임 |

-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① ㄱ. 대한민국법 | ㄴ. 대한민국법 | ㄷ. 일본법 |
| ② ㄱ. 대한민국법 | ㄴ. 대한민국법 | ㄷ. 영국법 |
| ③ ㄱ. 영국법 | ㄴ. 일본법 | ㄷ. 영국법 |
| ④ ㄱ. 영국법 | ㄴ. 대한민국법 | ㄷ. 일본법 |
| ⑤ ㄱ. 일본법 | ㄴ. 일본법 | ㄷ. 일본법 |

문 22. 「국제사법」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묵인 것은?

- | |
|--|
| ㄱ.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. |
| ㄴ.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. |
| ㄷ. 본인은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다. |
| ㄹ.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,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. |
| ㅁ. 임의대리에 관한 규정은 채권계약에만 적용된다. |

- | | |
|--------|--------|
| ① ㄱ, ㄴ | ② ㄷ, ㅁ |
| ③ ㄴ, ㄷ | ④ ㄹ, ㅁ |
| ⑤ ㄱ, ㄹ | |

문 23. 「국제사법」상 채권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준거법의 명시적인 선택 외에 묵시적인 선택도 인정된다.
- ② 준거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.
-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추정된다.
- ④ 계약의 일부에 관한 준거법 선택도 인정된다.
- ⑤ 계약 체결 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거법의 사후 지정이 인정되지만, 한번 지정된 준거법을 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.

문 24. 「국제사법」상 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? (단, A국법은 만18세 이상을, B국법은 만22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한다.)

- ㄱ. 만20세인 B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방으로 한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
- ㄴ. 만21세인 B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한 상속에 관한 법률행위
- ㄷ. 만19세인 A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후 대한민국에서 한 채권적 법률행위
- ㄹ. 만20세인 B국인이 A국에서 A국인을 상대방으로 한 B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

- ① $\neg, \perp$
② $\neg, \sqsubset$
③ $\perp, \sqsubset$
④ $\perp, \sqsupset$
⑤ $\sqsubset, \sqsupset$

문 25. 「국제사법」상 어음·수표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표의 소지인이 수표자금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및 그 권리의 성질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.
- ② 어음을 상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.
- ③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.
- ④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.
- ⑤ 수표에 인수, 지급보증,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의 효력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.

조세법

문 1. 「국세기본법」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(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.
- ②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이 요구된다.
- ③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.
- ④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.
- ⑤ 이 원칙에 반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.

문 2. 조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바(「국세기본법」 제18조 제3항),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.
- ② 판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「소득세법」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.
- ③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.
- ④ 이 규정은 과세관청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- 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된다.

문 3. 「국세기본법」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국세기본법」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·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법인으로 본다.
- ③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·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「소득세법」을 적용한다.
-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.